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1.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로서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4. 또한,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과 보고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에, '함께 보고하고, 함께 보호받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1부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1부. 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수신자 강원대학교병원장(지역환자안전센터장), 국군의무사령관(지역환자안전센터장),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지역환자안전센터장), 대한간호협회장(지역환자안전센터장), 대한약사회장(지역환자안전센터장), 대한의사협회장(지역환자안전센터장), 대한환자안전실향상간호사회장(지역환자안전센터장), 삼성서울병원장(지역환자안전센터장),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장(지역환자안전센터장), 재단법인 예수병원유지재단 예수병원장(지역환자안전센터장), (가나다순)

팀원 김진수 팀장 이승희 센터장(직무대리) 전주현 전결 08/31

협조자

시행 중앙환자안전센터-510 (2025.03.31.) 접수 ()
우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여의도동) / <https://www.koiha.or.kr/>
전화 02-2076-0678 전송 / jskim@koiha.or.kr / 공개
청령으로 국민 신뢰 인증으로 환자 안전